

# 서울특별시 수목원 관리·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
- 의안번호 : 제2021호
- 발의일자 : 2024년 8월 12일
-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### 2. 제안 이 유

-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를 촉진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수목원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수목원 운영 및 이용,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~제10조)
- 바. 수목원 내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1조)
- 사. 문화 프로그램 및 연간회원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2조, 안 제13조)

#### 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립수목원인 서울식물원 및 푸른수목원 등의 효율적인 수목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유전자원의 수집·증식·보존·관리와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·산업적 연구를 촉진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조례 제정의 타당성

-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은 수목원과 정원의 조성·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, 수목원·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<sup>1)</sup>되었음.
- 법 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제1항<sup>2)</sup>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‘공립수목원’을 구분하고 있으며, 제5조제4항<sup>3)</sup>과 제11조<sup>4)</sup>에서는

1) 「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」[시행 2001. 9. 29.] [법률 제6446호, 2001. 3. 28., 제정]

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15. 7. 21.] [법률 제13027호, 2015. 1. 20., 일부개정]

- 2) 제4조(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)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1. 국립수목원: 산림청장이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  2. 공립수목원: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  3. 사립수목원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  4. 학교수목원: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·운영하는 수목원
- 3) 제5조(국립수목원 등)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.
- 4) 제11조(입장료 등)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,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각각 ‘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’과 ‘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등’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.

- 서울시는 푸른수목원<sup>5)</sup> 공원 전체 면적(200,956 $m^2$ ) 중 103,354 $m^2$  구역을 지난 2018년 공립수목원 제1호로 등록한 바 있으며, 2019년 개원한 서울 식물원<sup>6)</sup>에서는 전체 면적(505,350.9 $m^2$ ) 중 105,731 $m^2$  구역을 2021년 공립수목원 제2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에 있음.<sup>7)</sup>
- 본 제정안은 ‘공립수목원’에 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사업을 규정하여 촉진하려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 판단됨.

## 2) 조례안 검토

- 세부적으로 안 제3조(시장의 책무)는 ‘생물 종 다양성 구현’, ‘수목원 활성화’, ‘식물 관련 문화 확산’ 등 수목원을 통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원 본연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될 것이라 기대됨.
- 안 제4조는 수목원이 수행할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수집·증식·보존, 학술적·산업적 조사, 데이터베이스 구축, 국내외 수목원간 정보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그 밖에 시민의 여가·문화 활동 활성화, 교육, 전시, 문화 사업을 포함하여 폭넓게 명시하고 있음.

5) 푸른수목원(구로구 향동 10-3 일대): 근린공원-도시지역권, 면적: 200,956 $m^2$

6) 서울식물원(강서구 마곡동 812): 근린공원-도시지역권, 면적: 505,350.9 $m^2$

7) 한편, 서울대공원(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대, 근린공원-광역권)은 전체면적(6,670,000 $m^2$ ) 중 229,759 $m^2$  구역을 2016년 경기도 공립수목원 제5호로 등록하여 운영 중임

- 안 제5조는 수목원의 개원 및 휴원에 관한 사항으로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주제원(온실)은 수목관리, 시설점검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에 휴원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밖에 시민의 안전상 문제, 식물 보호, 시설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휴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7조는 법 제11조에서 위임된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식물원 내 주제원(온실) 입장료(개인 및 단체)를 현재 시행 중인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견은 없으며<sup>8)</sup>, 이와 별도로 연간회원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바, 입지 위치 및 규모(면적, 보유종) 정도가 비슷한 국립세종수목원의 연회비 3만원을 기준으로 하되, 청소년, 어린이 대상으로 차등(감면)하여 규정한 것으로 파악됨<sup>9)</sup>.
- 안 제8조는 입장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‘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’되어 있는바, 본 제정안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<sup>10)</sup>과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0조<sup>11)</sup>를 준용하고 있음.

한편, 현행 ‘도시공원 조례’에서 규정할 때와 달라진 점은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<sup>12)</sup>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<sup>13)</sup>

8) 푸른수목원은 규모가 작고 보유종이 적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

9) 국립세종수목원 현황(규모: 65ha, 보유종: 2,035종)

국립세종수목원 연간회원제 연회비: <일반회원(만 7세이상 65세 미만): 30,000원>

서울식물원 현황(전체 규모: 50.5ha, 수목원 규모: 10.6ha, 보유종: 5,310종)

서울식물원 연간회원제 연회비(안): <일반회원 30,000원, 청소년 24,000원, 어린이 18,000원>

10) 안 제8조제1항제1호~제11호, 제15호, 제16호

11) 안 제8조제1항 제12호, 제13호, 제17호~제19호

12)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

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으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- 안 제11조는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 제17조의2<sup>14)</sup> 및 법 시행령 제8조의2<sup>15)</sup>를 준용하고 있으며, 그 밖에 시민들에게 위화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,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하는 행위,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, 온실 등 시민의 이동 동선 및 식물관리가 중요한 곳을 고려할 때 적절한 사항이라 판단됨.

---

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- 13) 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병역명문가"란 3대(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)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.
  - 2. "예우대상자"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- 3. "예우대상자 가족"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.

14)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

15) 안 제11조제3호~제10호

[붙임]

□ 서울식물원 조성 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일대
- 규 모 : 공원면적: 505,350.9㎡/ 수목원 등록면적 : 105,731㎡
- 조성내용 : 도시형 식물원 + 호수공원
- 공 사 비 : 2,156억원(보상 및 기반조성비 포함 시 총 7,422억원)

구 분	사업비(억원)	비 고
공원관련시설	2,156	
공 원	1,054	열린숲, 호수원, 주제원, 습지원
건축물	837	식물문화센터, 지하주차장, 정원문화학교 등
시설물	265	한강연결보행교, 나들목, 양천길 교량 등

- 공사기간 : '15. 11. ~ '20. 9.
- 개 원 : 2019. 5. 1. (임시개원 : 2018. 10. 11.)
- 주요시설
  - 건 축 물 : 식물문화센터(지하2층/지상4층) 등 12개동, 연면적 총31,292.54㎡
  - 기타시설 : 휴게·편의시설 9종, 어린이놀이시설 3종, 수경시설 4종, 육교 1종
- 보유수종 : 5,508종, 2,262,731본
  - 목본류 1,975종, 615,995본 - 지피초화류 3,533종, 1,646,736본
- 위 치 도 (\*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## □ 푸른수목원 조성 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번지 일대
- 규 모 : 공원면적: 200,956 $m^2$ / 수목원 등록면적 : 103,354 $m^2$
- 공 사 비 : 518억원(보상 및 공사)
- 공사기간 : 2009. 10. ~ 2013. 5.
- 개 원 : 2013. 6. 5.(2018. 10. 수목원 등록)
- 주요시설 : 숲교육센터 753.62 $m^2$ , 북카페 100 $m^2$ , 안내센터 40 $m^2$  등
- 보유수종 : 1,776종, 494,763본
  - 목본류 917종, 65,638본 - 지피초화류 859종, 429,125본
- 위 치 도 (\*수목원 구역: 빨간 점선)



